

의안번호	2126329
의 퇴 인	이헌승 의원
회 답 일	2024.1.8.
추계번호	23E50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교 및 부사관 등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장교 및 부사관 등에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5년간 총 1,305억원(연평균 26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세수효과는 시점별 간부 인원 규모 및 급여 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자료 구득상 한계로 대위 및 중사 등 계급을 추계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과소추계 가능성이 존재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장교 및 부사관 등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 (안 제12조제3호)	-262	-261	-261	-260	-260	-1,305	-261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제3항 (비과세소득)	○ 장교 및 부사관 등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 －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목에서 비과세되는 소득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병(兵)으로 복무한 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¹⁾이나 간부의 임금은 일반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 － (개정안) 「소득세법」 제12조 3호의 처목 신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군인사법」 제7조²⁾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 <table><tr><td></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장교 및 부사관 등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td><td>－</td><td>(신설)</td></tr></table>		현행	개정안	장교 및 부사관 등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	－	(신설)	
	현행	개정안							
장교 및 부사관 등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	－	(신설)							

-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가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2)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2.18., 2014.3.11., 2020.12.22.> 1. 장기복무장교: 10년(5년차 1회 전역 지원 가능) 2. 해군 또는 공군 장교로서 비행자격 취득자 중 해군사관학교 및 공군사관학교 졸업자는 15년, 이외는 13년(5년차 1회 전역 지원 가능) 3. 단기복무장교: 3년, 단 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 4. 준사관: 5년, 단 필수 기술분야 종사자는 10년(7년차 1회 전역 지원 가능) 5. 장기복무 부사관: 7년, 단 필수 기술분야 종사자는 10년(7년차 1회 전역 지원 가능) 6. 단기복무 부사관: 4년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제3항(비과세소득)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
 - 다만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효과는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2026년부터 발생(징수 기준)
 -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받는 급여부터 비과세가 적용
- 「국세통계연보」 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상 총급여규모별 유효세율과 간부의 신분 및 계급별 급여 지급인원 및 월평균 급여 자료를 바탕으로 비과세 신설 시의 세수효과 추계
 - 신분 및 계급별 연평균 소득 구간별 유효세율(결정세액/총급여)을 적용하여 1인당 소득세수 변화분을 구한 후 여기에 현재 인원수와 모집인원별 전망치를 곱해 총 세수효과 추계
 - 초급간부 급여에 대한 비과세라는 개정안 취지를 고려하여 장교는 소위, 중위 그리고 부사관은 하사 계급에 대한 세수효과 추계
 - 개정안에 따르면 장·단기 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군인사법」 제7조가 정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5년 이내 급여에 대해 전부 비과세하게 됨
 -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 추계를 위해서는 장교 및 부사관의 연차별 복무기간에 따른 인원 및 월평균 급여자료 등이 필요
 - 다만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대위와 중사 계급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내인 자와 이상인 자가 혼재하나 이를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대상에서 제외
 - 한편 준사관(준위)은 부사관이 원사로 진급 후 별도 전형을 거쳐 도달하는 계급이므로 초급간부(소위, 중위 및 하사) 급여 비과세라는 취지에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

- 신분 및 계급별 월평균 급여 및 지급인원을 바탕으로 추계하되, 연평균 공무원 임금상승률 및 간부 인원 변화율 반영
 - 연평균 공무원 임금상승률 자료는 2023.1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사용³⁾
 - 간부 인원 변화율의 경우 「2023~2027 국방중기계획」(국방부, 2023)의 초급간부 인원 축소규모의 연평균 변화율을 활용⁴⁾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인원 및 급여 현황) 2022년 기준 급여를 지급받은 중위·소위 및 하사는 6.4만명 수준이며 1인당 평균 급여는 신분 및 계급별로 2,954만~3,678만원 수준

[표 2] 신분 및 계급별 급여 지급 인원 및 연평균 급여 (단위: 명, 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구분		인원	연평균 급여	인원	연평균 급여	인원	연평균 급여
장교	중위	15,079	3,473	14,988	3,542	14,594	3,678
	소위	6,728	2,777	6,569	2,824	6,378	2,954
부서관	하사	44,393	3,055	45,359	3,125	43,021	3,252

주: 1) 5년 이내 복무자들에 대한 계급별 급여지급 개월 수를 이용하여 작성된 연평균 급여
 2) 휴직 및 사고인원은 제외
 3) 연중 진급 인원은 연도 말 해당 진급 계급 인원내 포함하여 작성됨
 4) 장기 및 단기 복무 유형 등 상세구분에 제한이 있으므로 자료 이용 및 해석에 유의 필요
 자료: 국방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장교 및 부서관 등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는 유형별 간부 인원수에 평균 연간급여와 유효세율, 공무원임금상승률 및 간부 인원의 연도별 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출
 - 2022년 기준 「국세통계연보」 상 신분 및 계급별 연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구간의 유효세율과 인원을 적용하여 전체 세수감소효과 추계

3) 국방부('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간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 각종 수당(주택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및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등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화되지 않아 이는 추계에 반영하지 않음
 4) 초급간부 축소(중·소위, 하사) 계획: 2022년 6.9만명 → 2027년 6.4만명(△0.5만명)(연평균 약 -1.5%)

[표 3] 장교 및 부사관 등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2022년 기준)

		연평균 급여 (만원, A)	유효세율(B)	1인당 소득세수 감소액(C=A×B, 만원)	인원 (D, 명)	세수 감소액 (E=C×D, 억원)
장교	중위	3,678	1.3%	48.1	14,594	70
	소위	2,954	0.5%	16.2	6,378	10
부사관	하사	3,252	1.3%	42.5	43,021	183
합계						264

주. 유효세율=결정세액/총급여, 결정세액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모두 고려하여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에서 구한 세수효과에 공무원임금상승률 및 간부 인원 변화율을 적용하여 향후 5개년간 세수효과 추계
 - 간부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임금상승률이 적용되므로 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임금상승률 전망치(2023.11.)가 추계기간동안 유지될 것으로 가정
 - 간부 인원 변화율의 경우 「2023~2027 국방중기계획」(국방부, 2023)의 초급간부 인원 축소규모의 연평균 변화율(약 -1.5%) 활용⁵⁾
- (추계결과) 장교 및 부사관 등에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5년간 총 1,305억원(연평균 26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세수효과는 시점별 간부 인원 규모 및 급여 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자료 구득상 한계로 대위 및 중사 등 계급을 추계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과소추계 가능성이 존재함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장교 및 부사관 등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 (안 제12조제3호)	-262	-261	-261	-260	-260	-1,305	-261

5) 국방부('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간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 각종 수당(주택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및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등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화되지 않아 이는 추계에 반영하지 않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문석휘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석휘	02-6788-4669	slugnoid@assembly.go.kr